부산 송도 풍림아이원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과 - 10863호(2007. 7. 5)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89-1외 64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 ~ 지상25층, 3개동 총 239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주택형 (단위:㎡)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동	라인	층수	층별세대수	공급금액				계약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면적포함)	계 (㎡)							대지비	건축비	VAT	계	1차
		전용	주거공용	소계 (㎡)													계약시
민영주택	110,5621 A	84,9860	25,5761	110,5621	47,3041	157,8662	27,1634	53	101동	1호	2층	1	84,134	163,866	-	248,000	12,400
											3~5층	3	84,134	163,866	-	250,000	12,500
											6~10층	5	84,134	163,866	-	251,000	12,550
											11~15층	5	84,134	163,866	-	252,000	12,600
											16~19층	4	84,134	163,866	-	253,000	12,650
										2호	3~5층	3	84,134	163,866	-	249,000	12,450
											6~10층	5	84,134	163,866	-	250,000	12,500
											11~15층	5	84,134	163,866	-	251,000	12,550
											16~19층	4	84,134	163,866	-	252,000	12,600
										3호	2층	1	84,134	163,866	-	246,000	12,300
											3~5층	3	84,134	163,866	-	248,000	12,400
											6~10층	5	84,134	163,866	-	249,000	12,450
											11~15층	5	84,134	163,866	-	250,000	12,500
											16~19층	4	84,134	163,866	-	251,000	12,550
	110,7132 B	84,9891	25,7241	110,7132	47,3059	158,0191	27,1644	68	102동	1호	1층	1	84,137	157,863	-	242,000	12,100
											2층	1	84,137	161,863	-	246,000	12,300
											3~5층	3	84,137	163,863	-	248,000	12,400
											6~10층	5	84,137	164,863	-	249,000	12,450
											11~15층	5	84,137	165,863	-	250,000	12,500
											16~20층	5	84,137	166,863	-	251,000	12,550
											21~25층	5	84,137	167,863	-	252,000	12,600
										4호	3~5층	3	84,137	165,863	-	250,000	12,500
											6~10층	5	84,137	166,863	-	251,000	12,550
											11~15층	5	84,137	167,863	-	252,000	12,600
											16~20층	5	84,137	168,863	-	253,000	12,650
											21~23층	3	84,137	169,863	-	254,000	12,700
									103동	4호	1층	1	84,137	158,863	-	243,000	12,150
											2층	1	84,137	162,863	-	247,000	12,350
											3~5층	3	84,137	164,863	-	249,000	12,450
											6~10층	5	84,137	165,863	-	250,000	12,500
											11~15층	5	84,137	166,863	-	251,000	12,550
											16~20층	5	84,137	167,863	-	252,000	12,600
											21~22층	2	84,137	168,863	-	253,000	12,650
	149,8197 C	117,0651	32,7546	149,8197	65,1598	214,9795	37,4166	20	103동	1호	3~5층	3	115,892	254,371	25,437	395,700	19,785
											6~10층	5	115,892	256,189	25,619	397,700	19,885
											11~15층	5	115,892	258,007	25,801	399,700	19,985
											16~20층	5	115,892	259,826	25,983	401,700	20,085
											21~22층	2	115,892	261,644	26,164	403,700	20,185

	163,0748 D	126,5817	36,4931	163,0748	70,4569	233,5317	40,4583	73	102동	2호	1층	1	125,313	275,806	27,581	428,700	21,435
											2층	1	125,313	278,534	27,853	431,700	21,585
											3~5층	3	125,313	280,352	28,035	433,700	21,685
											6~10층	5	125,313	282,170	28,217	435,700	21,785
											11~15층	5	125,313	283,988	28,399	437,700	21,885
											16~20층	5	125,313	285,806	28,581	439,700	21,985
											21~25층	5	125,313	287,625	28,762	441,700	22,085
									103동	2호	1층	1	125,313	271,261	27,126	423,700	21,185
											2층	1	125,313	273,988	27,399	426,700	21,335
											3~5층	3	125,313	275,806	27,581	428,700	21,435
											6~10층	5	125,313	277,625	27,762	430,700	21,535
											11~15층	5	125,313	279,443	27,944	432,700	21,635
											16~20층	5	125,313	281,261	28,126	434,700	21,735
											21~24층	4	125,313	283,079	28,308	436,700	21,835
										3호	1층	1	125,313	279,443	27,944	432,700	21,635
											2층	1	125,313	282,170	28,217	435,700	21,785
											3~5층	3	125,313	283,988	28,399	437,700	21,885
											6~10층	5	125,313	285,806	28,581	439,700	21,985
											11~15층	5	125,313	287,625	28,762	441,700	22,085
											16~20층	5	125,313	289,443	28,944	443,700	22,185
											21~24층	4	125,313	291,261	29,126	445,700	22,285
	198,0613 E	154,9937	43,0676	198,0613	86,2714	284,3327	49,5394	24	102동	3호	1층	1	153,440	374,782	37,478	565,700	28,285
											2층	1	153,440	377,509	37,751	568,700	28,435
											3~5층	3	153,440	380,236	38,024	571,700	28,585
											6~10층	5	153,440	382,054	38,205	573,700	28,685
											11~15층	5	153,440	383,873	38,387	575,700	28,785
											16~20층	5	153,440	385,691	38,569	577,700	28,885
											21~24층	4	153,440	387,509	38,751	579,700	28,985
	198,0842 Ea	154,9937	43,0905	198,0842	86,3066	284,3908	49,5528	1	102동	3호	25층	1	153,482	382,926	38,293	574,700	28,735

※ 110,5621㎡ ~ 110,7132㎡ 는 과거 33평형, 149,8197㎡ 는 과거 45평형, 163,0748㎡는 과거 49평형, 198,0613㎡ ~ 198,0842㎡는 과거 59평형에 해당됨.

■ 청약시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각 주택형의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견본주택 설치 기준) 비용이 제외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세대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소숫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이후 납일 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기 청약자격 전산 수록한 자중 주민등록사항 등(거주 지역, 부양가족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판매 및 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2, 09, 03)에 따라 주택소유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약 금		중도금						잔 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금액	분양가액의 5%	5%	10%	10%	10%	10%	10%	10%	30%
날 자	계 약 시	2007, 8, 23	2007, 11, 23	2008, 4, 23	2008, 9, 23	2009, 2, 23	2009, 7, 23	2009, 12, 23	입 주 시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1)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2006. 8. 18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특별공급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함

2)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 7. 6)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에게 일반공급세대수의 3% 범위내 (7세대)에서 특별 공급함.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3)경쟁시 우선 배점표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사항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2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4)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구 분	110.5621㎡	110.7132㎡	149.8197㎡	163.0748㎡	198.0613㎡
부산광역시	2세대	1세대	1세대	2세대	1

5)신청일시 및 장소 : 2007. 7. 10(화) 10:00~16:30 당사 견본주택　　6)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7. 7. 13(금) 14:00 당사 견본주택

※ 특별공급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7)대상자 구비서류

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 7. 6)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특별공급신청서(견본주택 비치) 및 배점기준표(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법령자료에서 서식 다운)
③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⑤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⑥ 호적등본 1통 (다음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분,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새대주가 아닌 분에 한함)
⑧ 무주택서약서(견본주택비치), 주민등록증 및 여권 지참,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3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1)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7. 6)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2)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3)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4)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5)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1항)

6)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

7)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 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 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 인정 기간으로 함.(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8)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

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 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 약 관 련 예 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및 추첨
민영주택	3자녀 특별공급	상기 7세대	상기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신청하여 지자체로부터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일반공급세대수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6항)	부산 광역시	2007.7.10 (화)	■ 접수장소 당사 견본주택 ■ 접수시간 10:00~16:30	■ 일 시 - 2007.7. 13 (금) (14:00) ■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불입한 1순위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80.8.29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2007. 7.11 (수)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분양지역기준)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불입한 1순위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85㎡초과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2순위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7. 7.12(목)		

■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분 신청요건

1)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2)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은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분은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3)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4일) 내에 '주택소유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본 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제	공통	① 민영주택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받아 접수, 3순위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②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제1,2순위자에 한함) ③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④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증 등 배우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및 낙첨시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입금이 되지 않는 통장으로 인한 피해 및 사건 등에 의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⑥ 주택소유현황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1순위 청약신청자에 한함)
	1순위	①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②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구 세대주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
3자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④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기준 3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청접수방법

- 층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같은 날짜에 신청접수 받되,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주택공급신청서(가입 순위 확인용)를 발급 받은 후 당사 견본주택에 공급 신청해야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신청접수는 당사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전 주택형	2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부산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2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낙첨자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 2007. 7.23 (월) 이후 (평일 10:00 ~16:30) 환불 가능함(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입금 가능한 청약자 본인 명의로 계좌로 무통장 입금처리(입금이 되지 않는 통장으로 인한 피해 및 사건 등에 의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단, 실수요자의 주택공급신청을 권장하기 위하여 3순위 당첨자의 계약포기시 청약신청금은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후 환불함.
- 3순위 낙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3자녀 특별공급	- 지자체(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청약을 신청한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와 같은 방법(공개추첨)으로 동, 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전주택형 공통	- 신청자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각 순위별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동호수가 결정됨. - 각 주택형별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자발표장소에 별도 공고함. - 입주자선정시 선순위 청약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분은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07년 7월 18일 ~ 2007년 7월 20일 (3일간, 평일시간 : 10:00 ~16:30)**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장소** : 당사견본주택 (문의전화 051-248-0700), 1차계약금 관리계좌 : 우리은행 1005-301-192399 예금주 : (주)유니온시스템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내에 견본주택에서 수납.(계약금 납부시 견본주택내 혼잡이 예상되고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은 반드시 부산광역시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내국인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부산광역시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1통)
외국인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부산광역시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주택소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관계기관 서류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후 계약 체결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미 계약 동·호수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계약금 전부 혹은 일부만 납부 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통장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1,2,3 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기 당첨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당첨자 발표일이 당사와 동일한 경우 양측 모두 청약이 무효가 되며,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당사보다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사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당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이 취소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를 준수함

■ 2차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우리은행	1005-501-192400	(주)유니온시스템	

- 2차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 지정된 납부 일에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만 가능(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융자지원

대출기관 : 국민은행 충무동지점

대출금액 : 총 분양금액의 60% (중도금 대출 - 이자후불제) ※융자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후 견본주택내 별도 공고 예정임.

■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예정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4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 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0 년 1월중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1,2,3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공급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 확인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으로 적출된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 받은날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3순위 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 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 될 수 있음.
- 마감자재내용과 발코니 형태는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결과 반영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만 설치됨.
- 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 및 조망이 다를 수 있음.
- 도로 및 지하철 인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인지하며 환경권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인지하며 환경권에 대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의 설비관련 공간은 주거 및 비주거 등 별도의 기계, 전기설비 등이 설치되므로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관계법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풍동실험등에 의한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단지 및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음.
- 확장형 발코니 공사에 의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변경,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조망, 일조, 도로소음 등 환경에 대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대피공간 또는 실외기실에는 건축심의사항에 의해 수직피난구가 설치됨.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계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대출신청자 본인 부담이며,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 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는 중도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단, 소숫점 이하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치 않기로 한다).
- 본 아파트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 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포함 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및 상가의 색체 및 옥탑 등 외관 디자인의 경우 색체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입면(창호 형태 및 색채, 외벽형태, 외부색채 등)은 실 시공시 계획이 변경되어질 수 있고 변경사항은 대관 인허가 후 확정 시공되어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을 인지하며 환경권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 주거내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의 설비관련 공간은 주거 및 비주거 등 별도의 기계, 전기설비 등이 설치되므로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음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59,208,520,000.	제02312007-101-00020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대상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 제외사항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이행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 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이자, 비용 기타 종속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초과하여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 모집 공고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가전제품,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2.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에 해당하는 잔금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 부산지점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051-602-3506)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주택건설공사 감리	(주)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805,093,974.	VAT별도
전기,정보통신 감리	(주)부흥이앤씨	₩100,000,000.	
소방감리	(주)한국나이스기술단	₩50,000,000.	

■ 시 행 자 : 주식회사 유니온시스템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55-1)
■ 시 공 자 : 풍림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 분양문의 : 051-248-0700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15-3번지, 풍림아이원 견본주택)
■ 상기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